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박수빈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태, 김인제,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
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송도호, 왕정순, 유정인,
윤기섭, 윤영희, 이병도,
이상욱, 이소라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최재란, 한 · 신, 허 · 훈,
홍국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,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음
- 최악의 폭염과 최악의 장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속출하게 했고, 이 같은 피해는 사회불평등 문제로 점철되고 있음
- 이상기후로 여겨온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, 매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동 조례 제 21조 제2항 제4호의 적응대책, 그 외 관련 정책 수립·시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,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매년 실시(안 제22조의3 제1항)

나.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(안 제22조의3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,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3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기후위기</u> <u>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</u> <u>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,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</u> <u>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</u> <u>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